복지규정 시행세칙

```
제
   정
          2006. 5. 26
   정(1)
          2007. 5. 1
개
개
   정(2)
          2007. 7. 9
개
   정(3)
          2007. 8. 1
개
   정(4)
          2007. 10. 22
개
   정(5)
          2008. 7. 1
   정(6)
          2008. 7. 17
개
   정(7)
개
          2009. 10. 14
개
   정(8)
          2010. 9. 15
개
   정(9)
          2011. 12. 30
   정(10)
          2013. 2. 28
개
   정(11)
          2014. 3. 3
개
   정(12)
          2014. 7. 18
개
개
   정(13)
          2014. 7. 24
   정(14)
          2016. 3. 17
개
   정(15)
개
          2017. 7. 7
   정(16)
          2020. 9. 29
개
          2021. 1. 28
개
   정(17)
   정(18)
          2022. 4. 26
개
개
   정(19)
          2022. 12. 22
개
   정(20) 2024. 1.18
개
   정(21) 2024. 12. 18
```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복지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전 및 보건관리) 규정 제3조의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업무수행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에 대한 위해예방조치, 환경위생시설의 개선, 질병예방 등 직원의 건강유지와 생명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을 말한다.

- 제3조(학자금 대여기준) ①규정 제8조에 의한 학자금 대여 대상 및 금액 등 기타 필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대여대상은 국내 및 국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으로 한다.
 - 2. 대여금액은 등록금 이내로 하며 총 한도는 직원 1인당 3,000만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국외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국립 및 주립학교는 서울대, 사립학교는 연세대(연세대에 해당학과가 없는 경우, 고려대)의 동일계열 수준으로 한다.
 - 3. 대여기간은 자녀 졸업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원금균등 분할상환 한다. 다만, 원미만은 절상한다.
 - 4. 이자는 무부리로 한다.
 - 5. 대여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. 다만, 1년이상 근속직원에 대해서는 1,000만원(2급이상 2,000만원) 한도로 신용취급 할 수 있다. ②학자금 대여는 동일시점 기준 자녀 4인까지로 한다.
 - ③기타 세부사항은 인사담당 부문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제4조(경조금지급) 규정 제9조에 의한 경조금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경조금 지급절차와 화환증정 및 장례지원에 수반한 업무처리절차는 인사담당 부문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①지급대상은 직원으로 한다.
 - ②직원의 자녀 출산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 -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- 2.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
 - 3.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
 - 4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5.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
 - 6.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
 - ③출산축하금 외의 경조금에 대한 지급범위 및 지급액 등은 사내복지기금 정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.
- 제5조(의료비 지원) 규정 제10조에 의한 의료비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

- 지원범위의 세부내역 및 업무처리절차는 인사담당 부문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①지원대상은 직원 및 직원의 가족(배우자, 미혼자녀, 부모, 배우자의 부모)으로 한다.
- ②의료비는 일반상병, 건강진단, 자녀 출산비용 및 건강보조기구 구입비에 한한다.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 및 미용 목적의 의료비, 시력교정술, 치아교정, 보철(임플란트 포함), 틀니, 보약재 비용은 제외한다.
- ③의료비는 사내복지기금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통합하여 운영한다.
- 제6조(콘도미니엄회원권) 규정 제11조에 의한 콘도미니엄 지원 업무처리절차는 경영지원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7조(동호회 지원) ①공사는 직원의 의사소통 원활화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동호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 - ②지원에 수반한 업무처리절차는 인사담당 부문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제8조 (삭제)

- **제9조(재해보상 지급기준 및 절차)** ①규정 제13조에 의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기준에 따른다.
 - ②재해보상을 신청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사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한다.
 - ③인사담당부서장은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직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- ④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요양보상은 소속부서장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앞으로 신청한다.
 - 1.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소속부서장의 의견서
 - 2. 치료진단서, 치료비 명세서 및 동 영수증
 - 3. 근로복지공단 발급 업무상 재해 증빙서류
- 제10조(재해부조 지급절차) ①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직원이 수재, 화재, 기타 비상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, 유실, 침수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.
 - ②재해부조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서장을 경유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지

급신청한다.

- 1. 수재를 입은 경우 읍·면장(동장)의 확인서
- 2. 화재를 입은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서
- 3. 기타 비상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서
- 제11조(암 및 상해보험 지원) ①공사는 직원의 불의의 사망·사고 및 업무외 사망·사고시 보상금 부족으로 유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에 대비, 직원의 생활안 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암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.
 - ②보험가입금액 및 지원에 수반한 업무처리절차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 임차사택의 제공에 대한 시행 시기는 인사담당부문장이 별도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11조는 공사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한 이후에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7월 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10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7월 1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에 따라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경조금 지원은 세칙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7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4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4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 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자녀부터 적용한다.

(별표 1)

출산축하금 지급표

구	분		지	급	액
1. 첫째자녀		1,000,000원			
2. 둘째자녀		2,000,000원			
3. 셋째자녀 이상		3,000,000원			

※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지급

(별표 2)

재해부조금 지급표

	구	분	지	급	액
1. 주택건물이	완전 소실, 유실, 또는	파괴된 경우	공사직원	전체	월 기준급
			평균	액의	3.9배
2. 주택건물이	1/2이상 소실, 유실, 5	포는 파괴된 경우	공사직원	전체	월 기준급
			평균	액의	2.6배
3. 주택건물이	1/3이상 소실, 유실, 5	포는 파괴된 경우	공사직원	전체	월 기준급
			평균	액의	1.3배